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4-1판 개정전후대비표

<환자지침관리팀>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1. 대응체계		
3	<p>[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('23.8.23. 발표, 8.31. 시행)]</p> <p>1.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등 고려, 코로나 19 4급 감염병 지정(8.31.) <p>2.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및 고위험군 보호 조치 당분간 유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마스크)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(감염취약시설 보호)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 병원·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하되, 면회, 외출·외박, 외부 프로그램 허용 <p>3. 일반의료체계 안착 노력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국민지원 일부 유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외래진료)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료(호흡기환자 진료센터(원스톱진료기관 포함), 의료상담·행정안내센터 종료) (병상)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의 현 대응체계 지속 (진단검사) 선별진료소 위기단계 하향(경계→주의) 시까지 유지 및 고위험군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(생활지원비·유급휴가비·방역물자) 지원 종료 (치료비) 중증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한시 지원 유지 (치료제 및 예방접종)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 	<p>[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('23.12.15. 발표, '24.1.1. 시행)]</p> <p>1.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등 고려, 코로나 19 4급 감염병 지정(8.31.) <p>2.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및 고위험군 보호 조치 당분간 유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마스크)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(감염취약시설 보호)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 병원·시설 입소자 선제검사*는 유지하되, 면회, 외출·외박, 외부 프로그램 허용 <p>* 사례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참고</p> <p>3. 일반의료체계 안착 노력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국민지원 일부 유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외래진료)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료(호흡기환자 진료센터(원스톱진료기관 포함), 의료상담·행정안내센터 종료) (병상) 지정격리병상 해제(12.31.) 및 일반병상 중심의 현 대응체계 지속 (진단검사)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 및 고위험군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(생활지원비·유급휴가비·방역물자) 지원 종료 (치료비) 중증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한시 지원 유지 (치료제 및 예방접종)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시지정병상 지정 해제 (12.31.) 감염취약시설에서 선제검사 방식 추가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<p>4. 기타</p> <p>-----</p>	<p>4. 기타</p> <p>-----</p>	
5	<p>나. 기관별 임무 개요</p> <hr/> <p>의료기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코로나19 환자 등 진단 및 치료 ◦ 코로나19 신고·보고(발생, 퇴원) ◦ 코로나19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관리 협조 ◦ 코로나19 환자 선별진료소 운영 	<p>나. 기관별 임무 개요</p> <hr/> <p>의료기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코로나19 환자 등 진단 및 치료 ◦ 코로나19 신고·보고(발생, 퇴원) ◦ 코로나19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관리 협조 ◦ 코로나19 환자 선별진료소 운영 	<p>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</p>
<p>II.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</p>			
8	<p>1. 사례 정의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◆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확인진단: 검체(비인두도말, 구인두도말, 가래 등)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○ 추정진단: 검체(비인두도말, 구인두도말, 가래 등)에서 특이항원 검출 <p>◆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</p> <p>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</p> </div> <p>○ 환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	<p>1. 사례 정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* * 환자, 추정환자, 병원체보유자(PCR, 신속항원 검사(전문가용) 검사결과 양성) <p>▶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</p> <p>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」 개정(‘24.1.1)</p> <p>◆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확인진단: 검체(비인두도말, 구인두도말, 가래 등)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○ 추정진단: 검체(비인두도말, 구인두도말, 가래 등)에서 특이항원 검출 </div>	<p>- 「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」 개정(24.1.1.)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</p>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<p>○ 의사환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심환자: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 없는 사람 - 추정환자: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의심되며,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<p>○ 병원체보유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	<p>◆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</p> <p>○ 환 자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</p> <p>○ 의사환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심환자: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 없는 사람 - 추정환자: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의심되며,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<p>○ 병원체보유자: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</p>	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						
8	<p>◆ 무료 검사 대상(별도 공지시 까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CR 검사 우선순위 해당 시 (부록 38 참고) -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37 368 927 783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237 368 584 432">보건소 선별진료소</th> <th data-bbox="584 368 927 432">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237 432 584 783">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-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</td> <td data-bbox="584 432 927 783">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(참고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」)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* 및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(간병인) * △응급실 내원 중증응급(의심)환자,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(일반병동, 중환자실 등)으로 이어진 환자 △고위험 입원환자(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 등), △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, △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◆ 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 검사 시,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</p>	보건소 선별진료소	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	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-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	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(참고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」)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* 및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(간병인) * △응급실 내원 중증응급(의심)환자,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(일반병동, 중환자실 등)으로 이어진 환자 △고위험 입원환자(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 등), △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, △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	<p>◆ PCR 무료 검사 대상(별도 공지시 까지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87 363 1675 847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987 363 1675 427">의료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987 427 1675 847">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(참고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」)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* 및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(간병인) * △응급실 내원 중증응급(의심)환자,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(일반병동, 중환자실 등)으로 이어진 환자 △고위험 입원환자(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 등), △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, △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◆ 검사 시,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</p>	의료기관	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(참고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」)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* 및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(간병인) * △응급실 내원 중증응급(의심)환자,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(일반병동, 중환자실 등)으로 이어진 환자 △고위험 입원환자(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 등), △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, △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로 무료검사 기관에서 선별진료소 삭제 - 의료기관,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-13439호, 2023.12.26.)에 따라 무료 대상자 범위 안내
보건소 선별진료소	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								
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-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	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(참고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」)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* 및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(간병인) * △응급실 내원 중증응급(의심)환자,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(일반병동, 중환자실 등)으로 이어진 환자 △고위험 입원환자(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 등), △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, △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								
의료기관									
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(참고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」) ②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* 및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(간병인) * △응급실 내원 중증응급(의심)환자,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(일반병동, 중환자실 등)으로 이어진 환자 △고위험 입원환자(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 등), △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, △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									
Ⅲ. 확진환자 관리									
9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확진자에서 사례 해당자로 용어 변경 						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<p>III 확진환자 관리</p> <p>1. 확진환자 관리</p> <p>가. 환자 관리</p> <p>○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</p> <p>▶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(24시)(6일 차 0시)까지 격리 권고 ▶ (예시) 11.1.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.5. 24:00까지 격리 권고</p> <p>▶ 단,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○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최대 기간 및 전파위험력을 고려함 ○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 ▶ (참고문헌) Kim J-M, Kim D, Kim E-J. Analysis of viral shedding and positive culture rates of Omicron-confirmed cases according to vaccination status. Public Health Wkly Rep 2022;15(14):871-2.</p> <p>▶ 단,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,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여부 결정 가능함 -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- HIV/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-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제 투여 받은 자 -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제 투여 받은 자 - 투약이 필요한 환자 -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※ (참고문헌) 영국 보건부 「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-19 patients(20.5.20)」의 7.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</p> <p>○ (건강관리) 확진자 스스로 건강관리하고, 증상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-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-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, 필요 시에는 치료계를 처방받아 관리</p> <p>◆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권고(예시) ○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빙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 ○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(특히, 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) ○ 마스크 상시 착용 ○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(운동, 노래, 함성 등) 자제 ○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,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○ 집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 가급적 필수공간(화장실, 독방 등) 분리 사용 및 혼자 식사하기</p>	<p>III 사례 관리</p> <p>1. 코로나19 사례 관리</p> <p>가. 사례 관리</p> <p>○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(이하 사례 해당자)는 5일간 격리 권고</p> <p>▶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(24시)(6일 차 0시)까지 격리 권고 ▶ (예시) 11.1.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.5. 24:00까지 격리 권고</p> <p>▶ 단,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사례 해당자는 7일간 격리 권고 ○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최대 기간 및 전파위험력을 고려함 ○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 ▶ (참고문헌) Kim J-M, Kim D, Kim E-J. Analysis of viral shedding and positive culture rates of Omicron-confirmed cases according to vaccination status. Public Health Wkly Rep 2022;15(14):871-2.</p> <p>▶ 단,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,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여부 결정 가능함 -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- HIV/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-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제 투여 받은 자 -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제 투여 받은 자 - 투약이 필요한 환자 -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※ (참고문헌) 영국 보건부 「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-19 patients(20.5.20)」의 7.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</p> <p>○ (건강관리) 사례 해당자 스스로 건강관리하고, 증상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- 사례 해당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-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, 필요 시에는 치료계를 처방받아 관리</p> <p>◆ 사례 해당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권고(예시) ○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빙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 ○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(특히, 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) ○ 마스크 상시 착용 ○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(운동, 노래, 함성 등) 자제 ○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,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○ 집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 가급적 필수공간(화장실, 독방 등) 분리 사용 및 혼자 식사하기</p>	<p>- 확진자에서 사례 해당자로 용어 변경</p>
10			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○ (진료)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진료 가능</p> <p>- 모든 확진자는 자율치료를 원칙으로 하며,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 있음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p>▶ 코로나19 위중증환자에 한하여 치료비 일부 항목에 대해 지원</p> <p>▶ 지원 대상, 지원 기간 등 치료비 관련 세부사항은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(제10번)」 참조</p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〉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단계</th> <th>정의</th> <th>중증도 분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일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</td> <td rowspan="2">경증 이하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</td> <td rowspan="2">중등증</td> </tr> <tr> <td>4</td> <td>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</td> </tr> <tr> <td>5</td> <td>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</td> <td rowspan="3">위중증</td> </tr> <tr> <td>6</td> <td>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</td> </tr> <tr> <td>7</td> <td>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</td> </tr> <tr> <td>8</td> <td>사망(death)</td> <td>사망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- 요양병원·시설 등의 고위험군 및 60대 이상 환자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에 진료 및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적극 권고</p>	단계	정의	중증도 분류	1	일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	경증 이하	2	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	3	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	중등증	4	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	5	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	위중증	6	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	7	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	8	사망(death)	사망	<p>○ (진료)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진료 가능</p> <p>- 모든 사례 해당자는 자율치료를 원칙으로 하며,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 있음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p>▶ 코로나19 위중증환자에 한하여 치료비 일부 항목에 대해 지원</p> <p>▶ 지원 대상, 지원 기간 등 치료비 관련 세부사항은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(제10번)」 참조</p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〉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단계</th> <th>정의</th> <th>중증도 분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일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</td> <td rowspan="2">경증 이하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</td> <td rowspan="2">중등증</td> </tr> <tr> <td>4</td> <td>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</td> </tr> <tr> <td>5</td> <td>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</td> <td rowspan="3">위중증</td> </tr> <tr> <td>6</td> <td>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</td> </tr> <tr> <td>7</td> <td>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</td> </tr> <tr> <td>8</td> <td>사망(death)</td> <td>사망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- 요양병원·시설 등의 고위험군 및 60대 이상 사례 해당자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신속한 진료 및 초기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적극 권고</p>	단계	정의	중증도 분류	1	일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	경증 이하	2	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	3	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	중등증	4	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	5	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	위중증	6	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	7	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	8	사망(death)	사망	
단계	정의	중증도 분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일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	경증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	중등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	위중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사망(death)	사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계	정의	중증도 분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일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	경증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(limit of activity but No O2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	중등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 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	위중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 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사망(death)	사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1	<p>○ (대응) 지자체 방역상황 및 대응역량에 따라 신고·인지시 노출 및 전파위험도 평가 후 판단 (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 결정)</p>	<p>○ (대응) 지자체 방역상황 및 대응역량에 따라 시설 자율 신고·인지시 노출 및 전파위험도 평가 후 판단 (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 결정)</p> <p>○ (관리방법) 지자체^{시도/시군구}는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기구 및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관할지역 감염취약시설 파악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 대응·관리 유지</p>	<p>- 기 시행중인 업무 추가(9.4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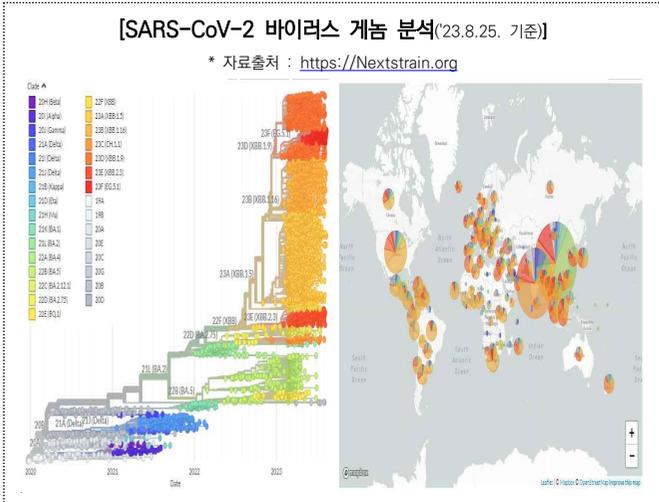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<p>[역학조사분석석담당관-1082(2023.8.30.): '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관리' ※ 기 시행중</p> <p>▶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 관리 및 보고</p> <p>① (보고기준)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기준(유전자검출) 및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내 10명 이상 집단 발생 사례</p> <p>② (보고주기)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취합하여 익주 월요일 보고 * 감염취약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환자관리, 감염관리 등 방역대응을 지속 하도록 안내 및 협조(8.30 공문발송)</p> <p>③ (보고체계) 보건소(월) → 시·도(화) → 권역별 질병대응센터(수) → 분청</p> <p>④ (보고방법) 시설→보건소(유선 등), 보건소→시도(자체 메일시스템), 시도→질병청(온나라/공직자메일) 활용 ※ 메일 송·수신 시 파일 암호조치 등 보안관리 주의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2	<p> 관련서식 [서식 5]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</p>	<p> 관련서식 [서식 5]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</p> <p>▶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 및 경과보고 양식 (8.30 공문, 붙임자료 참고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58 989 1682 1407"> <caption>00주차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 및 경과보고 양식-00화</caption> <thead> <tr> <th colspan="12">00주차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</th> </tr> <tr> <th rowspan="2">연월</th> <th rowspan="2">시·도</th> <th rowspan="2">지역</th> <th rowspan="2">시설명</th> <th rowspan="2">연락처</th> <th rowspan="2">연락처</th> <th rowspan="2">연락처</th> <th colspan="2">1차 집단발생</th> <th colspan="2">2차 집단발생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발생 일자</th> <th>발생 인원</th> <th>발생 일자</th> <th>발생 인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3.08</td> <td>서울</td> <td>강남구</td> <td>○○○○○○○○</td> <td>02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2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2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23.08.01</td> <td>10</td> <td>23.08.02</td> <td>5</td> <td>23.08.03</td> <td>15</td> </tr> <tr> <td>23.08</td> <td>경기</td> <td>안양시</td> <td>○○○○○○○○</td> <td>031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31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31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23.08.01</td> <td>8</td> <td>23.08.02</td> <td>3</td> <td>23.08.03</td> <td>11</td> </tr> <tr> <td>23.08</td> <td>충청</td> <td>대전</td> <td>○○○○○○○○</td> <td>042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42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42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23.08.01</td> <td>12</td> <td>23.08.02</td> <td>6</td> <td>23.08.03</td> <td>18</td> </tr> <tr> <td>23.08</td> <td>전라</td> <td>전주</td> <td>○○○○○○○○</td> <td>06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6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6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23.08.01</td> <td>9</td> <td>23.08.02</td> <td>4</td> <td>23.08.03</td> <td>13</td> </tr> <tr> <td>23.08</td> <td>경상</td> <td>대구</td> <td>○○○○○○○○</td> <td>05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5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5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23.08.01</td> <td>7</td> <td>23.08.02</td> <td>2</td> <td>23.08.03</td> <td>9</td> </tr> <tr> <td>23.08</td> <td>강원</td> <td>춘천</td> <td>○○○○○○○○</td> <td>03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3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3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23.08.01</td> <td>6</td> <td>23.08.02</td> <td>1</td> <td>23.08.03</td> <td>7</td> </tr> <tr> <td>23.08</td> <td>충청</td> <td>세종</td> <td>○○○○○○○○</td> <td>031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31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31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23.08.01</td> <td>5</td> <td>23.08.02</td> <td>2</td> <td>23.08.03</td> <td>7</td> </tr> <tr> <td>23.08</td> <td>경상</td> <td>부산</td> <td>○○○○○○○○</td> <td>051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51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51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23.08.01</td> <td>11</td> <td>23.08.02</td> <td>5</td> <td>23.08.03</td> <td>16</td> </tr> <tr> <td>23.08</td> <td>경상</td> <td>울산</td> <td>○○○○○○○○</td> <td>052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52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52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23.08.01</td> <td>4</td> <td>23.08.02</td> <td>1</td> <td>23.08.03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23.08</td> <td>경상</td> <td>대구</td> <td>○○○○○○○○</td> <td>05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5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5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23.08.01</td> <td>3</td> <td>23.08.02</td> <td>1</td> <td>23.08.03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23.08</td> <td>경상</td> <td>대구</td> <td>○○○○○○○○</td> <td>05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5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5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23.08.01</td> <td>2</td> <td>23.08.02</td> <td>1</td> <td>23.08.03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23.08</td> <td>경상</td> <td>대구</td> <td>○○○○○○○○</td> <td>05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5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053-○○○○-○○○○</td> <td>23.08.01</td> <td>1</td> <td>23.08.02</td> <td>1</td> <td>23.08.03</td> <td>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00주차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												연월	시·도	지역	시설명	연락처	연락처	연락처	1차 집단발생		2차 집단발생		비고	발생 일자	발생 인원	발생 일자	발생 인원	23.08	서울	강남구	○○○○○○○○	02-○○○○-○○○○	02-○○○○-○○○○	02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10	23.08.02	5	23.08.03	15	23.08	경기	안양시	○○○○○○○○	031-○○○○-○○○○	031-○○○○-○○○○	031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8	23.08.02	3	23.08.03	11	23.08	충청	대전	○○○○○○○○	042-○○○○-○○○○	042-○○○○-○○○○	042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12	23.08.02	6	23.08.03	18	23.08	전라	전주	○○○○○○○○	063-○○○○-○○○○	063-○○○○-○○○○	063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9	23.08.02	4	23.08.03	13	23.08	경상	대구	○○○○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7	23.08.02	2	23.08.03	9	23.08	강원	춘천	○○○○○○○○	033-○○○○-○○○○	033-○○○○-○○○○	033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6	23.08.02	1	23.08.03	7	23.08	충청	세종	○○○○○○○○	031-○○○○-○○○○	031-○○○○-○○○○	031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5	23.08.02	2	23.08.03	7	23.08	경상	부산	○○○○○○○○	051-○○○○-○○○○	051-○○○○-○○○○	051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11	23.08.02	5	23.08.03	16	23.08	경상	울산	○○○○○○○○	052-○○○○-○○○○	052-○○○○-○○○○	052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4	23.08.02	1	23.08.03	5	23.08	경상	대구	○○○○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3	23.08.02	1	23.08.03	4	23.08	경상	대구	○○○○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2	23.08.02	1	23.08.03	3	23.08	경상	대구	○○○○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1	23.08.02	1	23.08.03	2	- 기 시행중인 업무 추가(9.4)
00주차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월	시·도	지역	시설명	연락처	연락처	연락처	1차 집단발생		2차 집단발생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발생 일자	발생 인원	발생 일자	발생 인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3.08	서울	강남구	○○○○○○○○	02-○○○○-○○○○	02-○○○○-○○○○	02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10	23.08.02	5	23.08.03	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3.08	경기	안양시	○○○○○○○○	031-○○○○-○○○○	031-○○○○-○○○○	031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8	23.08.02	3	23.08.03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3.08	충청	대전	○○○○○○○○	042-○○○○-○○○○	042-○○○○-○○○○	042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12	23.08.02	6	23.08.03	1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3.08	전라	전주	○○○○○○○○	063-○○○○-○○○○	063-○○○○-○○○○	063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9	23.08.02	4	23.08.03	1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3.08	경상	대구	○○○○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7	23.08.02	2	23.08.03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3.08	강원	춘천	○○○○○○○○	033-○○○○-○○○○	033-○○○○-○○○○	033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6	23.08.02	1	23.08.03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3.08	충청	세종	○○○○○○○○	031-○○○○-○○○○	031-○○○○-○○○○	031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5	23.08.02	2	23.08.03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3.08	경상	부산	○○○○○○○○	051-○○○○-○○○○	051-○○○○-○○○○	051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11	23.08.02	5	23.08.03	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3.08	경상	울산	○○○○○○○○	052-○○○○-○○○○	052-○○○○-○○○○	052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4	23.08.02	1	23.08.03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3.08	경상	대구	○○○○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3	23.08.02	1	23.08.03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3.08	경상	대구	○○○○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2	23.08.02	1	23.08.03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3.08	경상	대구	○○○○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053-○○○○-○○○○	23.08.01	1	23.08.02	1	23.08.03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13	3. 확진자 격리 권고 및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	<삭제>	- 생활지원비 지원종료(8.31)
VI. 실험실 검사 관리			
15	가. 채취장소 ○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	가. 채취장소 ○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	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
17	가. 의뢰방법 ○ 검체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 관련서식 [서식 18]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○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입원환자 및 보호자는 취합검사로 의뢰(개별검사 불가) -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건강보험 청구건은 별도로 정한 관련 급여기준을 따름 나. 기관별 검사 의뢰 ○ (의료기관 선별진료소)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, 검사가 불가능한 기관은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○ (보건소 선별진료소)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top: 5px;">▶ 수탁검사기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가능 ▶ 최초 검사에서 미결정 결과가 나온 경우는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 의뢰</div>	가. 의뢰방법 ○ 검체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 관련서식 [서식 18] 검체시험의뢰서 서식(역학조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시) ○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입원환자 및 보호자는 취합검사로 의뢰(개별검사 불가) ○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건강보험 청구건은 별도로 정한 관련 급여기준을 따름 나. 검사 의뢰 ○ (의료기관)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, 검사가 불가능한 기관은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○ (보건소)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(역학조사 목적 검사 시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top: 5px;">▶ 최초 검사에서 미결정 결과가 나온 경우는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 의뢰</div>	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
18	가. 검체운송 담당 ○ (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)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,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○ (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할 경우) 환자 최초인지 보건소 담당자가	가. 검체운송 담당 ○ (의료기관)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,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○ (보건환경연구원) 환자 최초인지 보건소 담당자가 관할	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<p>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</p> <p>4. 검사 오류 의심 시 조치 가. 개요 ○ (검사 오류) 검체 채취·취급·검사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하여 검사 결과가 잘못 판정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</p> <p>▶ 타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 요청하는 재검사는 해당하지 않음 ▶ (검사 오류 의심 사례의 예시) - 동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채취한 서로 다른 다수의 검체가 모두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례 - 동일한 검체에 대한 반복 검사 결과가 상이한 사례 - 의료진 소견에 따라, 임상증상이 코로나19 감염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사례</p> <p>나. 기관별 역할 ○ (지자체) 검체 채취 단계를 포함한 검사 전 과정에 대한 1차 조사▶(오염 및 검체 뒤바뀜 가능성, 역학적 연관성 등),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</p> <p>▶ (1차 조사의 예시) - 검체 채취 상황 점검(장갑 교체, 청소, 소독, 검체 정보 기록, 검사 도구 취급 등 오염·뒤바뀜 발생 가능성 검토) - 의심 검체의 앞, 뒤 순서에 채취 또는 검사한 검체의 검사 결과 확인 - 검사기관의 반복 검사 시행 여부 및 검사 결과 확인(필요시, 잔여 검체 활용한 재검사 시행)</p> <p>○ (질병관리청) 심층 조사, 검사기관 점검·관리 등</p> <p>다. 절차 및 방법 ① 지자체의 1차 조사 결과 검사 오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조사 종료</p> <p>▶ 피검자가 검토를 요청한 경우, 피검자에게 조사 결과 통보</p> <p>② 검사 오류가 확인된 경우</p>	<p>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(역학조사 목적 검사 시)</p> <p>〈삭제〉</p>	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자체의 1차 조사 결과 검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, 보건소는 피검자에게 해당 사실 통보 및 필요한 후속 조치 시행(환자 신고 정정 요청, 재발 방지 조치 시행 등) ③ 검사 오류가 의심되나,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지자체) 1차 조사 결과, 검토 의견 등 포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(진단총괄팀)에 검토 요청(공문 송부) - (질병관리청) 지자체의 1차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, 필요시 추가 조사하여 검사 오류 가능성 검토 → 지자체에 검토 결과 통보 		
부록			
76	부록 13<삭제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top: 5px;">▶ 환경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(제7판)」 참조</div>	부록 13<삭제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top: 5px;"><삭제></div>	- 환경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(제7판)」 폐지
88	부록 22	부록 22 <삭제>	- 전담치료병상 지정 해제 (12.31.)
104	부록 36 ▶ (폐기물 등 환경관리) 생활 및 의료폐기물 *은 관할 지자체(보건소)에서 수량 및 수거일 등 전반적인 관리 및 관련 물품 지원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top: 5px;">* (환경부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」 참조</div>	부록 36 ▶ (폐기물 등 환경관리) 생활 및 의료폐기물 *은 관할 지자체(보건소)에서 수량 및 수거일 등 전반적인 관리 및 관련 물품 지원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top: 5px;"><삭제></div>	- 환경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(제7판)」 폐지
108	부록 38	부록 38 <삭제>	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
109	부록 39 ○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,901,002개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공유(8.25. 기준, GISAID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top: 5px;">▶ 1개(*19.12.24.)→1,567개(*20.4.30.)→1,467,158개(*21.6.15.)→14,212,802개(*22.12.15)→15,901,002(*23.8.25)</div>	부록 39 ○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,301,489개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공유(12.7. 기준, GISAID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top: 5px;">▶ 1개(*19.12.24.)→1,567개(*20.4.30.)→1,467,158개(*21.6.15.)→14,212,802개(*22.12.15)→15,901,002(*23.8.25)→16,301,489(*23.12.7)</div>	- 자료 현행화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---	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



- ▶ -----
- ▶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류 및 모니터링
- 질병관리청도 VOC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중으로, '21년 알파(B.1.1.7), 베타(B.1.351), 감마(P.1), 델타(B.1.617.2) 등을 지정하여 감시하였고, '2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모든 오미크론을 VOC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음
 - 또한,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다양한 하위 세부계통으로 분류되어, 그 중 주요한 세부계통 변이를 별도 분리하여 모니터링(XBB.1.16, XBB.1.9.1, EG.5, XBB.2.3 등)하고 있음(8.2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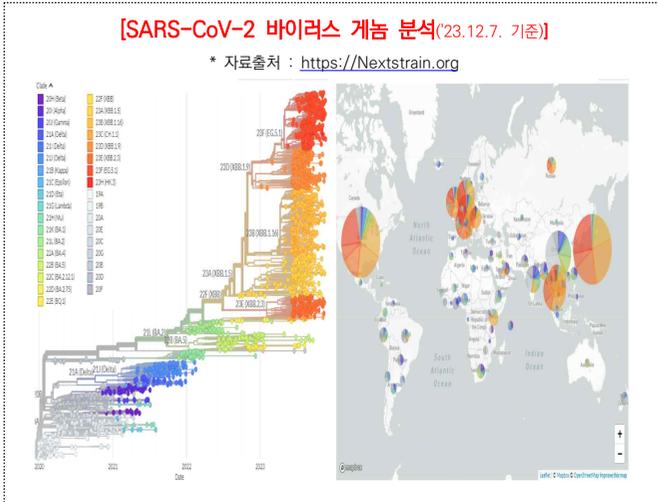
나. 병원소

○ -----

다. 변이

○ -----

○ 국내의 경우, '21년 7월 델타, 22년 1월 오미크론 BA.1, 22년 3월 BA.2, 22년 7월 BA.5, '23년 1월 BA.2.75의



- ▶ -----
- ▶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류 및 모니터링
- 질병관리청도 VOC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중으로, '21년 알파(B.1.1.7), 베타(B.1.351), 감마(P.1), 델타(B.1.617.2) 등을 지정하여 감시하였고, '2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모든 오미크론을 VOC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음
 - 또한,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다양한 하위 세부계통으로 분류되어, 그 중 주요한 세부계통 변이를 별도 분리하여 모니터링(EG.5, HK.3, BA.2.86 등)하고 있음(12.7)

나. 병원소

○ -----

다. 변이

○ -----

- 오미크론 중 가장 변이 폭이 큰 BA.2.86이 확인(23년 7월)되어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임

○ 국내의 경우, '21년 7월 델타, 22년 1월 오미크론 BA.1, 22년 3월 BA.2, 22년 7월 BA.5, '23년 1월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하위 세부계통인 BN.1이 우세화되며 유행을 주도하였고, 이후 다수 XBB 세부계통(XBB.1.5, XBB.1.16, EG.5 등)의 점유 증가가 확인됨	BA.2.75의 하위 세부계통인 BN.1이 우세화되며 유행을 주도하였음 . 이후 다수 XBB 세부계통(XBB.1.5, XBB.1.9.1, EG.5 등)의 점유 증가가 확인되며, '23년 11월에는 EG.5의 하위계통인 HK.3가 우세화되었음	
문고 답하기(Q&A)			
138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Q1. 코로나19 검사는 언제,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독감 등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우선 받고,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검사(유료)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·의원에 방문해서 검사, 치료 등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 ○ 다만,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검사 종류(PCR 또는 신속항원검사), 검사 비용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. ○ 또한,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, 위기단계 하향(경계→주의) 전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Q1. 코로나19 검사는 언제,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독감 등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,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·의원에 방문해서 검사, 치료 등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 ○ 다만,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검사 종류(PCR 또는 신속항원검사), 검사 비용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. ○ 또한,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, 위기단계 하향(경계→주의) 전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	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
138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Q2. 더 이상 무료 검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?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더라도, 위기단계 하향(경계→주의) 전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므로,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Q2. 더 이상 무료 검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?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래의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- (환자) 유증상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, 감염 시 위험도가 높은 입원* 예정 환자 * △응급실 내원 중증응급(의심)환자, 응급의료기관 내원 	-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(12.31.)로 무료검사 기관에서 선별진료소 삭제 - 의료기관,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-13439호, 2023.12.26.)에 따라 무료대상자 범위 안내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				
	<p>○ 단, 우선순위 대상이 일부 조정되어,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한 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, 사전에 우선순위(부록 38)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 또한, 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에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*은 건강보험과 국비(본인부담금) 지원을 통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(「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」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코로나19 무료 PCR 검사 대상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57 750 931 1045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257 750 627 805">보건소 선별진료소</th> <th data-bbox="627 750 931 805">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257 805 627 1045">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-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</td> <td data-bbox="627 805 931 1045">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이러한 지원 대상 외에는,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</p>	보건소 선별진료소	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	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-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	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	<p>분만환자 중 입원(일반병동, 중환자실 등)으로 이어진 환자 △고위험 입원환자(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 등), △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·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, △노인의료복지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 입소자</p> <p>- (보호자) 감염시 위험도가 높은 입원 예정 환자의 상주보호자(간병인)</p> <p>○ 이러한 지원 대상 외에는,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</p>	
보건소 선별진료소	의료기관(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)						
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-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(간병인)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	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* 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·면역저하자						
140	<p>Q3.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?</p> <p>○ 감염병 등급 조정(2급→4급)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</p>	<p>Q3. 국가에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?</p> <p>○ 감염병 등급 조정(2급→4급)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</p>	- 사례정의 변경 및 지정격리병상 해제에 따라 지원 대상 안내				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<p>위중증 환자의 치료비(본인부담금)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</p> <p>▶ 세부내용은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업무(제10판)」 참조</p>	<p>위중증 환자의 치료비(본인부담금)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</p> <p>○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* 중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원하고, 중환자실 내 격리실**에서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환자</p> <p>* 환자, 추정환자, 병원체보유자(PCR,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검사결과 양성)</p> <p>** 지정격리병상 해제(23.12.31.)에 따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(지정격리병상) 제외</p> <p>▶ 세부내용은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업무(제10판)」 참조</p>	
140	<p>Q4.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?</p> <p>○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,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,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p>	<p>Q4.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?</p> <p>○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,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</p>	- 다중이용시설 내용 현행화
142	5.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 Q1, Q2	〈삭제〉	- 생활지원비 지원 종료(8.31)
143	<p>6.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</p> <p>Q1. 해외입국자에 대한 최신화된 방역절차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?</p> <p>○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</p> <p>Q2.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입력 방법은?</p> <p>○ 질병청 누리집, 코로나19 누리집 공지사항, 큐코드 사이트 (https://cov19ent.kdca.go.kr)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</p>	〈삭제〉	- 큐코드 누리집 및 해외감염병 NOW 사이트 주소 현행화

쪽	현행(14판)	14-1판 개정(안)	개정사유
144	<p>7. 기타</p> <p>Q1.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, 여행 전 확인해야 할 입국 관련 정보가 있을까요?</p> <p>○ 여행 전 질병관리청 ‘해외감염병 NOW’에서 제공하는 해외 감염병 정보와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한 각국의 해외입국자 조치현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▶ (해외감염병 NOW) www.해외감염병now.kr/infect/occurrence_list.do ▶ (외교부해외안전여행) www.0404.go.kr/dev/main.mofa</p>	<p>7. 기타</p> <p>Q1. 해외입국자에 대한 최신화된 방역절차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?</p> <p>○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</p> <p>Q2.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입력 방법은?</p> <p>○ 큐코드 누리집(http://qcode.kdca.go.kr)에서 확인 가능</p> <p>Q3.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, 여행 전 확인해야 할 입국 관련 정보가 있을까요?</p> <p>○ 여행 전 질병관리청 ‘해외감염병 NOW’에서 제공하는 해외 감염병 정보와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한 각국의 해외입국자 조치현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▶ (해외감염병 NOW) http://해외감염병now.kr/nqs/oidnow/infect/occurrence_list.do ▶ (외교부해외안전여행) www.0404.go.kr/dev/main.mofa</p>	<p>- 큐 코드 누리집 및 해외감염병 NOW 사이트 주소 현행화</p>